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금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1) 대 여 금 : 금 ㅇㅇㅇ원

대 여 일: 2000. 0. 0.

변제기일: 20○○. ○. ○.

약정이자 : 월 1%.

(2) 대 여 금 : 금 ㅇㅇㅇ워

대 여 일: 2000. 0. 0.

변제기일: 2000. 0. 0.

약정이자 : 월 1.5%.

(3) 대 여 금 : 금 ㅇㅇㅇ워

대 여 일: 2000. 0. 0.

변제기일: 20○○. ○. ○.

약정이자 : 월 2%.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각각 빌려갈 때는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준다고 하며 빌려갔으나, 20○○. ○.경 이자가 제일 높은 위 세번째의 차용금만을 변제하고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자는 무기녕 원금조차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원고는 원고의 생활이 어려워져 피고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도 하고, 또한 2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서까지 발송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은 피고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 3

차용증

1. 갑 제2호증의 1, 2

통고서(내용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 · · · · · · · · · · · · · · · · ·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